

제 1448 호
1989-8-2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 공 보 관 반 중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규 칙	
제2296호 :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3
제2297호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10
● 고 시	
제400호 : '8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고시.....	12
제403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3
제405호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고시.....	14
● 공 고	
제722호 : 도시계획안공고.....	14

(이면계속)

일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726호 : 전문건설업면허신청공고	15
제728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경	16
제738호 : K·S표시정착처분공고	16
◎ 구 고 시	
제 6호 :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원경	16
제12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7
제13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7
제26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8
◎ 구 공 고	
제 6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8
제 23호 :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18
제 24호 :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	19
제 66호 :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	20
제 92호 : 동관인신조사용승인공고	20
제157호 : 관인교부공고	21
제331호 : 관인신조공고	22
◎ 사 령	
◎ 정정공고	

규 칙

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서울특별시규칙제2296호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의 특례) ㉠국민체육진흥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물(이하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광고주가 설치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으며 각 광고물의 설치기준은 별표 13에 의한다.

1. 시내버스 외부광고
2. 영업용택시 표지등광고
3. 환경정화용 대형광고
4. 탑 광고

5. 전광 및 네온광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의 허가신청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7호 서식에 의하며, 구청장이 광고물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8]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1] 제2호 및 제3호의 허가신고여부 및 설치기간관중 "1월이내"를 각각 "15일이내"로 한다.

[별표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및 [별지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2 및 별표13의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2 및 별표13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국민체육진흥광고물허가의 범위) 제2조의 2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은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올림픽광고의 시설(법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가 올림픽홍보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허가한다.

[별표13]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종 류	설치장소	규 격	재 료	색 상	설 치 방 법	허가신고여부 및 설치기간
1. 시내	노선버스	좌우측면	1.알루미늄	1.황광도료	1.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	허가.

종 류	설치장소	규 격	재 료	색 상	설 치 방 법	허가신청서류 및 설치기간
버스 이부 광고	좌우측면	200mm (가로)× 50mm (세로) 이내	2.프리스 3.스틸레스	사용금지 2. 흑·적 색1/2초과 금지	를 거쳐 허가한다. 2. 1개좌함에 좌측면1개, 우측면1개, 우측면의 광고는 노선번호 및 행선안내 시범에 지장 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 광고판은 밀착되도록 하여 다른 차량에 방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년 이내
2. 영업 용 택시 표지등 광고	택시표지 등	1. 일체적 삼각형 2. 가로55 cm-61cm 3. 높이24 cm이내 4. 밀면20 cm이내	1.아크릴 2. 프리스 틱	1.형광도료 사용금지 (바탕색은 밝은색으 로 한다)	1. 양측 4각면에 광고표 시를 한다. 2. 전후 3각면에 회사명등 을 표시한다. 3. 내부에 전구를 부착하 여 방화기능을 유지하 여야 한다.	허가, 2년 이내
3. 환경 정화용 대형광 고	철도·국 도·고속 도로변중 환경이 불 량하여 시장 또 는 구청 이 특별히 차폐미화 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고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	20cm (가로)× 10cm (세로) 이내	앵글철관	1. 바탕색 형광도료 사용금지 2. 바탕색 은 흑·적 색1/2초과 금지	차폐미화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연합으로 설치할 수 있다.	허가, 2년 이내

종 류	설치장소	규 격	재 료	약 상	설 치 방 법	허가신청요역부 및 설치기간
	○자동차 등의 차량 시계열 장 애가 되지 아니하는 곳 ○자연수 복이나 농 작물의 생 육에 피해 를 주지 아니하는 곳 ○도로제 방등 시설 물의 기능 에 영향 을 주지 아니하는 곳 ○계획중 이거나 추 진중인공 사에 지장 이 없는 곳 ○자연경 관등 주 변경관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하는 곳					
4. 담 광고	주요관광 지 및 경 기 장내	자상5m 이내	1.철관 2.시멘트 3.알미늄	1.바탕색 행랑도료 사용금겨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허가, 2년 이내

종 류	설치장소	규 격	재 료	색 상	설 치 방 법	허가신청여부 및 설치기간
			4 스펀 렌스등			
5. 전광 및 내온 광고	1. 대도시 의 상가 터미널 의 옥상 또는 벽 면 2. 체육진 흥공단 과 허가 장이 현 의하여 위치를 결정하 되, 기존 의 다른 시설물 에 부가 설치할 경우에 는 그 시설물 의 안전 도등 기 술적 검 사를 실 시하여 결정하 다.	20m (가로)× 15m (세로) 이내.	전광판류 의 특성 에 따르 되, 우수 규격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1. 전분가가 합계하여 광고 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2. 특히 주간에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심 야소등 장치를 하여야 한 다. 3. 주거전용 및 주거지(아파 트)인접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허가, 2년이내

[별지 제6호서식]			
광고물설치허가신청의뢰서			
신청	주소		
영업	소명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의종류및수량			
설치위치또는장소			
설치기간			
작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제작자주소	업소명	제작업자 등록번호	
제작자성명	①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관리자의주소,성명		전화번호	
기타			
<p>국민체육진흥광고물을 설치하고자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을 의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①</p> <p>서울특별시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구하</p>			
<p><첨부서류></p> <p>1. 신청서에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가. 설치장소의 사진 및 광고물의 천연 도안</p> <p>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외자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p> <p>다. 사용건물 또는 게시시설 소유자</p> <p>라.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 허가신청서</p> <p>주: 1. 신청인은 영업소 및 점포등을 경영하는 대표자와 건물주(또는 관리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p> <p>2.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p>			

[별지 제7호서식]

광고물설치허가신청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을 설치하고자 서울특별시광고물통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를 대리하여 별첨과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구 경 장 귀 하

- 첨부: 1. 허가신청내역서 1부
- 2. 허가신청의뢰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국민체육진흥공고물설치(표시)허가증

○○시 (구)제 호
신 청 자

귀 공단에서 신청한 국민체육진흥공고물설치(표시)허가에 대하여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함.

1. 광고물의 종류
2. 설치목적
3. 설치규격 및 수량
4. 설치장소
5. 허가기간
6. 권리자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7. 시공자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8. 허가조건

시 장 (구 장 경)



<p>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개정 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9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p> <p>●서울특별시규칙제2297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p> <p>제8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p> <p>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훈련성력의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p> <p>제4장 제6절에 제9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93조의 2(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p> <p>[별표11]중 통신직렬란 다음에 교관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중 기재직렬란 다음에 보건직렬란, 간호조무직렬란, 위생직렬란 및 사무보조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교환	교환		전화교환기능사1급	전화교환기능사2급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생	위생	위생사1급 위생시협사1급	위생사2급 * 위생시협사2급 영양사 조리장	위생사3급 위생시협사2급 영양사 조리사1,2급 이용사, 미용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조리장 오물처리사1급	영양사 조리사1,2급 오물처리사1,2급

사무 보조	조무		한글타자1급 영문타자1급 주산1급 부기1급	한글타자2. 3급 영문타자2. 3급 주산 2. 3급 부기 2. 3급 사회복지사 각급학교교사자격 보육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사1. 2급
	라자		한글타자1급 영문타자1급	한글타자2. 3급 영문타자2. 3급
	계리		주산1급 부기1급	주산2. 3급 부기2. 3급
	사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준사서

[별표11]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표에 해당하는 직급에의 특별채용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자격 취득후 다음표에 정하는 기간이상 임용예정직위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한다.

직 명	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분야	보 건			
보 건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 : 5년 의무기록사 : 5년 방사 선사 : 5년 물리치료사 : 5년 치과기공사 : 5년 치과위생사 : 5년 작업치료사 : 5년 간 호 사 : 5년 조 산 사 : 5년	임상병리사 : 2년 의무기록사 : 2년 방사 선사 : 2년 물리치료사 : 2년 치과기공사 : 2년 치과위생사 : 2년 작업치료사 : 2년 간 호 사 : 2년 조 산 사 : 2년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 호 사 : 5년 조 산 사 : 5년	간 호 사 : 2년 조 산 사 : 2년	
위 생	위 생	위 생	위 생 사1급 : 3년 위 생 시 험 사1급 : 3년	영 양 사 : 3년	위 생 사2급 : 2년 위 생 시 험 사2급 : 2년

사무보조	사역	영양사: 3년	오물처리사1급: 3년
	사서	2급경사서: 6년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승진후보자경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400호

198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출결산고시

198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4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89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장

(단위: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액	세출액	이월액
일반회계	1,139,436,589,000	1,266,056,244,716.44	1,012,746,043,140	253,310,201,576.44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103,296,000,000	85,566,107,241	84,977,795,730	588,311,511
주택재개발비 "	69,876,000,000	68,915,962,191	33,525,394,215	35,390,567,976
토지구획정리사업비 "	250,508,000,000	347,612,367,194.67	87,293,613,577	260,318,753,617.67
하수처리장비 "	85,685,000,000	91,872,237,879	42,498,373,542	49,373,864,337
유료도로비 "	20,852,000,000	14,966,021,873	5,758,222,080	9,207,799,793
의료보호기금 "	24,013,744,000	24,039,807,480	23,927,837,481	111,969,999
특정건축물정리비 "	6,279,000,000	6,205,744,441	1,651,760,780	4,553,983,661
주차장 시설비 "	38,833,000,000	39,446,820,702	7,136,918,820	32,309,901,882
올림픽사업비 "	175,748,000,000	189,264,125,716	166,224,081,850	23,040,043,866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액	세출액	어울액
복합개발사업비	283,480,000,000	239,371,114,260	207,007,888,455	32,363,225,805
사용료수수료통합징수비	70,581,000,000	9,963,727,361	9,121,275,360	812,452,62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1,954,000,000	1,897,415,189	1,889,160,000	9,256,189
수도사업비	253,239,000,000	2,263,325,176	219,209,737,732	23,422,587,444
병원사업	4,080,000,000	4,770,093,514	3,690,085,000	1,080,008,514
저하철운수사업비	104,940,000,000	121,610,493,481	104,940,000,000	16,670,493,481
도시개발사업기금	42,105,000,000	44,962,309,473	35,224,044,258	9,738,265,215
재해구호사업기금	7,317,000,000	7,640,162,924	179,812,040	7,640,350,884
계	2,622,203,333,000	2,806,763,088,432.11	2,047,001,044,066	759,762,044,366.11

●서울특별시고시제40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중구 제5호('89. 6. 2)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한 회현동1가 100-84-117-1번지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중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8. 24

- 당초: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변경: 서울특별시시장
- 가. 사업 시행위치: 중구 회현동1가 100-84-117-1번지간
-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 회현동1가 100-84-117-1번지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폭 6m, 연장 180m
- 라. 사업의 시행자: 당초: 중구청장
변경: 서울특별시시장(중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 1989년 6월인가일로부터
준공예정일: 1989년 12월 30일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세목조사: 아래
- 법칭: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기재생략)

토 지 조 서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및 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주 소	성 명	
110-2	대지	22.5	회현동1가 110	최창희	보상협의 불응
117-1	"	87.6	" 117-1	조기희	"
114	"	10.6	" 114	선병택	"
계		120.7			

건 물 조 서						
지 번	구조	용 도	지축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비 고
				주 소	성명	
117-1	목조 와장	주 배	82.5	중구 회현동1가 117-1	조기희	보상 협의 불용
<p>◎서울특별시고시제405호</p> <p>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p>				<p>여 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1989. 8. 28.</p> <p>서울특별시장</p>		
<p>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조서</p>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창선어린이공원	마포구 창전동	35-28	1,185		
<p>나. 관계도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도면과 같음.</p>						
<p>공 고</p> <p>◎서울특별시공고제722호</p> <p>도시 계획 안 공 고</p> <p>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관련 도서를 보</p>				<p>입니다.</p> <p>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가. 공람기간: 1989. 8. 28.~1989. 9. 10.</p> <p>나. 공람장소: 성북구청도시정비과</p> <p>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 도면과 같음(도면생략)</p> <p>1989. 8. 24.</p> <p>서울특별시장</p>		
<p>도시 계획 안</p> <p>○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p>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신 설	공용의 청사	정릉동 966-100	594㎡	정릉1동 사무소		

◎서울시공고제726호

전문건설업면허신청공고

건설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 8. 25.

서울특별시

1. 신청업종: 전문공사업 19종 전업종 목공사, 토공사 미장방수, 석공사, 도장공사, 조적공사, 비계공사, 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물공사, 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 궤도공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 수중공사, 조정식제공사, 조정시설물 설치공사
2. 신청자격: 신청마감일 현재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춘자
 - 면허기준 내용: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경영능력
3. 신청서접수기간: 89. 9. 25-9. 30(6일간)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서울시청 시민과
 - 접수: 근무시간내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5.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가.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구비서류
 - 단, 자본금 관계증빙서류는 기업진단 보고서(공인회계사나 기업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작성)로 대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나. 대표자가 만35세 이하인자는 병역 증명서

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건설업 면허 신청일까지 시설 및 장비등록원부등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발행받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위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그 유효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함

6. 수수료: 업종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10,000원 신청서 뒷면에 첨부할 것
가. 건설업 면허기준중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자로서 경영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부가치세법에 의하여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영업을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①건설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 ②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자, 주택사업자, 건설자계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중기대여업자와 임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 ③9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건설업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 한 자
- ④협회(건설, 전문건설, 해외건설)에서 건설업의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자

나.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731-6371~3)또는 대한 전문건설협회 서울지사부(247-5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728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

1. 영등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반포, 압구정아파트 지구)내 환지 예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요건 서울특별시 공고 제654호('89. 7. 31)로 환지계획변경 내용을 공람공고 완료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4조, 제47조,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지계획변경 인가 및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하엿기 공고합니다.
2. 환지예정지 변경조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환지계획 변경 내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나 미수령시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1989. 8. 28

서울특별시 장

— 다 — 음 —

- 가. 사업명 : 영등토지구획정리 사업
- 나. 위치 : 서초구 반포, 잠원, 서초동 일부 강남구 신사, 압구정동 일부
- 다. 변경대상 : 65필지
- 라. 변경면적 : 13,130.8평
- 마. 변경내용 : 별첨 조서 및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738호

K.S 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시정지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9. 8. 30.

서울특별시 장

— 다 — 음 —

1. 업체명 : 천일정밀
2. 대표이사 : 최형식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82-3
4. 규격번호 : KSB 1324
5. 규격명 : 스피링 와셔
6. 종류,등급 : 경장선
7. 표시정지처분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처분사유 : K.S규격 미달

구 고 시

●마포구고시제6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변경

1. 마포구 고시 제1호(87. 5. 28)로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7-1호 소매시장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 계획사업(시장) 시행허가를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산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8. 18.

마포구청 장

- 다 음 -							
가. 건물 일부 용도변경(지하1층) (기정) 주차시설, 근린생활시설, 시장, 편의및방재실 (변경) 주차시설, 시장, 편의및방재실				다. 건축연면적: 86,017.39㎡			
나.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 허가면적 변경 (당초) 3298.61㎡ (변경) 4314.71㎡				라. 규 모 : 아파트 15층 6동 758세대			
◎송파구고시제12호				4. 사업시행기간: 1989. 8.-1991. 6.			
				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송파구고시제13호				◎송파구고시제1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8. 송 파 구 청 장				1989. 8. 송 파 구 청 장			
- 다 음 -				- 다 음 -			
1. 사업 명 : 방이동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1. 사업 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성북전화국 직장주택조합의 10개조합				2. 사업주체 : 서울 한미은행 제2주택조합의 3개조합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송파구 방이동 212-9의 70필지				가.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55번지의 12필지			
나. 대 지 면 적 : 29,857.37㎡				나. 대 지 면 적 : 7,549.60㎡			
5.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다. 건축연면적: 17,689.84㎡			
				라. 규 모 : 아파트 10층 2동 160세대			
4. 사업시행기간: 1989. 8.-1991. 2.							
구 분	등급	류 별	폭 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고
기 정	소로	3	6	105㎡	송파구 가락본동 56	송파구 가락본동 55-5	
변 경	"	3	6	105㎡	"	"	폐지

●동작구고시제2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5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8. 17
 동 작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시장남구대치동961번지
(주)신아주택 대표 신윤재
3. 사업시행자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시동각구사당동302번지의2필지
나) 사업규모

주택종별	규 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사업비(천원)
	층	동	세대				
연립주택	3	1	30	1,887.58	706.22	3,227.43	1,756.800

4. 사업기간 : 1989. 8 - 1990. 12. 30
5. 설계도서 : 생략

- 1) 사업시행지 : 성북구 석관동135-3~116-3

구 공 고

●성북구공고제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585호(69.8.18)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로)및 지적고시된 석계역-석관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로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건물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 성북구청(토목과·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89. 8
 성 북 구 청 장

- 2) 사업종류및명칭 : 석계역-석관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 3) 사업의규모 : 도로개설 폭 : 10m, 연장 : 365m
- 4)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 5) 사업착수및중정예정일 : 89.8.-89.12.31
-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소재지·지번·시목·지적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 별첨
-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 8) 기타사항 : 의견및 기타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공고제23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

1. 당초 서울시고시제3호(69.1.18)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및 지적 고시된 성내동 220

<p>174간의 2개소 도로 개설 공사의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고시 제20호, 88. 9. 5)가 서울시 고시 제383호(89. 8. 9)로 결정 고시되고 강동구 고시 제1호(89. 8. 18)로 지적 고시되어 이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도로,하수도)실시 계획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2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2.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가. 공람장소: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89. 8 - 89. 9</p>	<p style="text-align: right;">1989. 8. 21</p> <p style="text-align: center;">강 동 구 청 장 공 략 개 요</p> <p>1. 사 업 명: 성내동 220-174간의 2개소 도로 개설공사</p> <p>2. 사업시행구간: 성내동 220-174번지간 성내동 147-213번지간 천호동 121번지 일개지</p> <p>3. 사업시행규모: 도로개설 B=6-8m L=256m, 하수도(D=450-600mm/π) L=212.5m</p> <p>4.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p> <p>5. 사업착수일및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 일로부터 2년간</p> <p>6. 기타 사항: 의견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 장소에 제출및 문의 바랍니다.</p>
---	--

토 지 조 서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변경전	천호동	121-103	대	10	성내동 174-3	구본란외1인
변경후	천호동	121-103	대	10	명일동 54한양(아)3-301	구본란외1인
변경전	"	121-102	대	74	성내동 174-3	구본란외1인
변경후	"	121-102	대	74	명일동 54한양(아)3-301	구본란외1인
변경전	"	121-106	대	61	천호동 387-14	박 중 우
변경후	"	121-106	대	61	성동구 구의동 66-17	한 계 원








<p>◎강동구공고제24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 변경공람공고</p> <p>1. 당초 서울시 고시 제3호 (969.1.18)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및 지적고시된 천호동 145-3의 2개소 도로 포장공사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고시 제20호, 88. 9.5)가 서울시 고시 제383호(89.8.9)로 결정 고시되고 강동구 고시 제11호(89. 8.18)로 지적 고시되어 이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 변경</p>	<p>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2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2.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가. 공람장소: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89. 8 - 89. 9</p> <p style="text-align: right;">1989. 8. 21</p> <p style="text-align: center;">강 동 구 청 장</p>
--	---











공 랑 개 요		하수도(D=600mm/m) L=55m (D=450mm/m) L=30m
1. 사 업 명 : 친호동 145-3외 2개소 도로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친호동125-4 친호동121-84간 친호동425-8 친호동425-4간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강동구청장)
3. 사업시행구간 : 도로개설 B=8m L=100m " B=4m L=36m	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 부터 2년간	6. 기타 사항 : 의견및 상세한 사항은 상 기 공람 장소에 제출및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친호동145-81	대	12	성북구 동선동3가 258	안환복		

<p>●강동구공고제66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 공람공고</p> <p>1. 서울시 고시 198호 (714.7)로 도시계획 시설(도로)결정및 지적승인 고시된 둔촌아파트-친호대로간을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만안에 게 공람공고 합니다.</p> <p>2.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가. 공람장소 : 강동구청 토목과</p>		<p>나. 공람기간 : 89. 8. 23-89. 9. 5 1989. 8. 23 강 동 구 청 장</p>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랑 개 요</p> <p>1) 사 업 명 : 둔촌아파트-친호대로간 도로 개설 공사(5차)</p> <p>2) 사업시행구간 : 둔촌동82-10거여동길</p> <p>3) 사업시행규모 : 도로개설B=15mL=90m</p> <p>4) 사 업 시 행 자 : 강동구청장</p> <p>5) 사업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 부터 2년간</p> <p>6) 기타사항 : 의견및 상세한 사항은 상 기 공람 장소에 제출및 문의 바랍니다.</p>				
토 지 조 서						
위 치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비 고
둔촌동88-5	담	49	강남구 반포동 82-2		해황선원(주)	
" 87-6	전	481	강동구 둔촌동 87-7		이 승 구	
" 87-8	담	144	" 87-7		이 승 구	
" 87-13	대	230	" 87-7		"	

<p>●관악구공고제92호 등관인신조사용승인공고</p>		<p>우리구의 동사무소 설치 조례 개정(89년 8월11일)에 의거 산림제12동 사무 소가 신 설됨에 따라 그 편인, 직인을 신규로 조</p>
-----------------------------------	--	--

각 89년 9월 1일 부터 사용되자 관인 규정 제9조 및 관악구 관인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9년 8월 18일 관 악 구 청 장 1. 사용일시 : 1989년 9월1일 09 : 00		
인 영				
공인명	신림제12동장직인 (일반사무용)	신림제12동계인 (일반사무용)	신림제12동농직인 (민원사무용)	신림제12동계인 (민원사무용)
<p>◎은평구공고제157호</p> <p>관 인 교 부 공 고</p> <p>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 제1동장, 신사제2동장의 관인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인규칙 제5조에 의거 교부 승인하고 구 관인은 동규칙 제6조에 의거 폐기함을 동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p> <p>1989년 8월 23일</p> <p>은 평 구 청 장</p>				
<p>1. 교부관인명</p> <p>○신사제1동장(일반사무용1, 민원사무용1, 제인1)</p> <p>○신사제2동장(일반사무용1, 민원사무용1, 제인1)</p> <p>2. 폐기관인명</p> <p>○신사동장(일반사무용1, 민원사무용1, 제인1)</p> <p>3. 사용개시일 : '89. 9. 1</p> <p>4. 관인인영 : "아 래"</p>				
인 영	교부인영 			
공인명	신사제1동장의인	신사제1동장의인 (민원사무전용)	계 인 (신사제1동)	

인 영			
공인명	신사제2동장의인	신사제2동장의외인 (민원사무전용)	계 인 (신사제2동)
인 영	폐기인영 		
공인명	신사동장의외인	신사동장의외인 (민원사무전용)	계 인 (신사동)
<p>◎서초구공고제331호</p> <p>관인신조공고</p> <p>관인 규정 제5조,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인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반포 제4동의 신조된 관인을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p>		<p>서초구 관인규칙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1989. 8. .</p> <p>서 초 구 청 장</p> <p>1. 관인 사용 개시일: 1989년 9월 1일</p> <p>2. 신규사용인</p>	
인 영	 		 
공인명	반포제4동장인(일반사무용및민원사무용)		반포제4동 계 인

사 령

◎ 1989년8월19일자 7급공무원징계 명 제34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성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기획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로
김화원	불문(경고)	남산공원관리사무소	

◎ 1989년8월19일자 6급공무원징계처분취소 명 제34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동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경심사 위원회의 결정 (사건89-12 89.6.29) 에 의거 1989. 1. 10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건설자재사업소	지방행정주사

◎ 1989년8월21일자 지방별정직7급상당공무원신규임용 명 제34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박정옥	지방별정직7급상당(영양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경찰국 경무과 근무를 명함	신규

인사발령통지			명 제34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정비국 지적과장	지방기계기좌에 임함	대통령
	지방지적기좌 김원태	내무국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지적기좌에 임함		89. 8. 1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지적과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경태옥
	지적관리계장에 포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승을 명함
	대통령 89. 8. 18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대통령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2과 기계기좌	내무국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이동오		89. 8. 1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승을 명함		

◎ 1989년8월18일자 5급공무원전보 명 제34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윤승원	성동구	동작구	지방지적기좌

성 명		발령 사항	원 부 서	직 급
◎ 1989년8월21일자 농촌지도사전출령 제345호				
송종철	농촌진흥청	전출을 명함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 1989년8월23일자 6급이하공무원정계처분취소령 제346호				
김계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건 89-9. '89. 6. 29)에 따라 '89. 1.11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남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사
김광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건 89-10 '89. 6.29)에 따라 '89. 1.11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김포수원지 사무소	지방토목기사보
◎ 1989년8월25일자 5급기술직공무원파견및근무명령령 제347호				
한상태	종합건설본부(지하철건설기획단요원)	파견('89. 8. 25-별도지시시까지)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시설관리 파 장 기 좌
이중호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	종합건설 본 부	공사 3부 지방전기 기 좌
◎ 1989년8월29일자 6급이하공무원전보및파견령 제349호				
황인동	전자계산소		자동차관리(사)	지방행정서기
유윤호	"		관 약 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점	"		중 구	지방행정서기보
오세용	"		중 량 구	"
김희수	"		전 산 담 당 관	지방행정주사보
변태순	"		"	"
권영포	"		자동차관리(사)	지방별정직7급상당
송태만	종합건설본부		강 동 구	지방행정서기
방우달	예산담당관 파견	(89. 9. 1 - 90. 8. 31)	농 속 파	지방행정주사
최규철	"		건 전 생 활 파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진호	영등포구청장			감사관	이사관	
이영근	내무국 근무			영등포구청장		
공무국의여행명령사항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팔당수원지	지방공업 기정	황한균	일본	89. 8. 31 - 9. 4 (5일간)	계약자 부담	팔당수원지 상수도시 설현대화사업에 따른 기술 연수
	기능직7급 10급 고용직	이은중 홍석주 원철상 김성태	일본	89. 8. 31 - 9. 13 (14일간)		
단기해외훈련파견명령						
파견자			파견국	파견기간	파견경비	파견목적
소속	직명	성명				
불가치도과장	서기관	김홍진	불란서 헝가리	'89. 9. 8 -10. 6	총무처 부담	불란서 국립행정연수 원 및 헝가리 시찰
여행명령사항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하수과	시설기정	최재범	일본	89. 8.31 - 9.10	시비 (\$436)	재해예방국제세미나참 석 및 하수분야 시찰
	토목기사보	홍충식		89. 9. 5 - 9.10	시비 (\$1,105)	
환경독지국 심사분석, 담당관 법무담당관	이사관 지방행정 사무관 서기관	강혁기 류경기 김순직	호주, 싱가폴	89. 9. 1 - 9.10 (10일간)	시비 (\$11400)	국제지방정부연합제29차 세계총회참석및공인사회 체육센터 운영전략
시험운동장 건전생활과	서기관 행정사무관	신중식 김정근	일본, 독일	89. 9.10 - 9.23 (14일간)	시비 (\$7,820)	체육부주관선진국제육 시설관리운영및활용실 태연수 참가

공무국의 여행명령사항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내무국	서기관	신동우	서독,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89.8.29 - 9.14 (17일간)	문교부부담	교원국의연수현지평가답사
	지방하위	박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서독	89.9.18 - 10.6 (19일간)	시비 (\$4525)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지방군수과정연수원 외국지방자치운영실태 비교연수
	부이사관	박한경	미국		시비 (\$4314)	
	"	박종욱	캐나다		시비 (\$4314)	
"	"	도명정	멕시코		× 3인	
공무국의 여행명령사항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관광담당관	서기관	지건홍	미국, 캐나다	89.10.20 - 10.31 (12일간)	시비 (\$7828)	제59차 ASTA 총회 참석 및 관광자료수집
"	행정사무관	유안	일본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관	박성배	미국	89.9.22 - 10.3 (12일간)	시비 (\$6656)	국제공인분석화학기술대회 참가 및 연구기관 시찰
"	"	김명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정정공고</div> 서울특별시						
<p>시보제1447호(89.8.19)내용중 성동구고시제15호(65-57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계획의 강동구청장을 성동구청장으로 바로 잡습니다.</p>						